

일반대학원 화학과 운영 내규

개정 : 2018. 02.01.

제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화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 2조 (적용범위와 효력)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화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장 입학관리

제 3조 (우수학생의 유치) 화학과 소속 교수들은 화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제3장 교육과정 및 교·강사 배정

제 4조 (취득학점)

-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할 학점은 33학점(전공 24학점, 연구지도 9학점) 이상으로 한다.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연구논문 제출자는 39학점 (전공 30학점, 연구지도 9학점)을 취득해야 하며, 추가 취득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지정하는 과목으로 한다.
- ② 박사학위과정 에서 취득해야할 학점은 45학점(전공학점 24학점, 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) 이상으로 한다.
- ③ 석·박사 통합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은 78학점(전공학점 : 60학점, 연구지도학점 : 18학점(2~7학기 신청) 포함)이상으로 한다.

- ④ 석사학위과정에서 학부-대학원 연계과정 대상자(석사)는 30학점 이상(전공학점 : 24학점, 연구 지도 학점: 6학점(2~3학기 신청) 포함)이며 연계과정 진학자 중 학부에서 대학원 해당학과 개설 전공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2개 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전공 24학점, 연구지도세미나 I(3학점)을 이수하고 3학기에 연구지도세미나Ⅱ(3학점)를 이수한자는 연구지도세미나Ⅲ(3학점)를 생략하여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.

제 5조 (과목개설)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.

제 6조 (교·강사 배정)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.

제4장 논문지도

제 7조 (지도교수의 선정) 지도 교수는 입학과 동시에 선정하며,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확정한다.

제5장 자격시험

제 8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 화학과의 5개의 전공(무기화학, 물리화학, 분석화학, 생화학, 유기화학) 중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응시해야 하며, 지도교수의 과목은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다.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 또는 구두시험을 시행하며, 구두시험의 경우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한다.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의 합격점수는 평균 80점 이상이다.

제 9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)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은 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, 국제학술지 혹은 SCI 저널 (SCI, SCIE)의 주저자 혹은 공동저자로 게재 확정(게재 승인 편지 인정)되거나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에 1회 이상 발표자(포스터 또는 구두발표)에 한하여 면제 받을 수 있다. 박사 학위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은 연구재단 등재지, 국제학술지 혹은 SCI 저널 (SCI, SCIE)의 주저자(제1저자, 교신저자)로 종합학력시험 실시일 이전까지 게재 확정(게재 승인 편지 인정)되어야 면제 받을 수 있다. 기존의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함.

제 10조 (외국어시험 과목)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.

제6장 학위과정 취득

제 11조 (석사학위 취득 방법)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. 연구논문이란 전공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으로, 작성 양식은 학위 논문과 같으나 중앙도서관(국회 및 국립도서관)에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는다. 연구논문 심사 결과 총 2회 불합격 판정 시 학위논문에 준하여 '수료'로 인정한다. 기타 심사절차는 학위논문과 동일하며 제반 행정사항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.

제 12조 (석사학위 과정의 선택) 석사학위 취득 방법의 선택은 학위 논문 및 연구 논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. 석사 과정 2학기 말에 선택하며,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, 출력 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 13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.

제 14조 (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위 취득)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.

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제 15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.

제 16조 (논문심사일정)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.

제 17조 (논문심사위원)

-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각 대학원장이 선정한다.
- ②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석사논문 3인, 박사논문 5인으로 구성하며 박사논문 심

사위원 중 2인은 외부에서 선정한다.

- ③ 석사 학위논문 대체 방안인 연구논문의 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(지도교수 + 교내 전공교수)이 심사하고, 합격여부 판정은 심사위원장이 우선권을 지닌다.
- ④ 논문 지도교수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.

제 18조 (논문심사원칙)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다.

- ① 학위 논문은 실험연구의 결과물이어야 한다.
- ② 학위 논문은 새로운 지식과 발견을 보고하는 것이어야 한다.
- ③ 학위 논문은 적절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.
- ④ 학위 논문은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로 기술되어야 하며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.

제 19조 (논문 제출) 학과로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또는 제본본과 전자문서를 제출하며, 제본은 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. 학위논문은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를 해야 한다. 연구논문은 겉표지 없이 제본본과 전자문서를 학과에 제출하며,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. 연구논문은 중앙도서관(국회 및 국립도서관)에 제출하지 않으며, 학위논문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는다.

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18조 (의사결정 방식)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부칙 - 석사학위 취득 방법 선택(학위 논문 또는 연구 논문)의 적용 대상은 본 내규 개정일(2018. 02. 01)이후에 진학하는 석사 과정생부터 적용한다.